

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-199호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(과태료)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9월 30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행정처분(과태료) 공고

1. 대상자(4명)

성명	소재지	처분 내용
여○식	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(이하 생략)	과태료 부과(교육미이수)
박○현	경상북도 경산시 펜타힐즈1로 130 (이하 생략)	과태료 부과(교육미이수)
정○모	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20번길 26 (이하 생략)	과태료 부과(교육미이수)
전○곤	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142 (이하 생략)	과태료 부과(교육미이수)
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

-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: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·훈련 미이수
- 부과내용 : 과태료 250,000원(법정 기준 500,000원, 1/2 감경)
- 근거법령 :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91조제3항제1호(과태료), 시행령 제121조제1항(과태료의 부과기준)

3.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

- 납부방법 :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(☎ 051-660-1019)
- 납부기한 :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수납기관
①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(giro.or.kr), 인터넷뱅킹(국고금계좌) 등으로 납부

4. 안내사항

-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증가산금)을 징수합니다.

- 또한, 당사자가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(☎051-660-101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